

# 특수 교육 대상자의 대학 교육 시설 문제점과 대책

김 정 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I. 들어가는 글 : 대학 내에서의 접근권의 의미

장애인이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통합된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있어서나 건축물 그리고 모든 정치, 문화, 사회, 체육 등의 접근(access)이 가능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있어 접근권의 의미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접근권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접근권의 광의의 개념에는 앞서 밝힌 바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접근권이라는 개념이 매우 생소하므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장애인은 건축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물론 대중 교통에의 접근, 청각 장애인의 통신에의 접근, 정치적 기본권인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투표소에 접근할 권리, 문화 유적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광의의 개념이 있다. 이러한 광의의 개념인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접근권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

겨 두고 본 논문에서는 협의의 접근권인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장애인 기본권으로서의 복지초차청구권(福祉措置請求權)은 장애인을 위한 각종의 특수 시설 및 편의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비금전적(非金錢的)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sup>1)</sup>

미국에서는 건축 장애물 규제법 시행에 관한 1975년도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실제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sup>2)</sup>

만약 장애인이 공공 건물을 출입하고 이용할 수 없다면 쉽사리 투표도 할 수 없고, 정부의 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자립이나 자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직장과 일반적인 사업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재능과 시장성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미국에서는 1959년 당시 대통령인 존 에프 케네디가 건축 장벽(Architectural barriers)으로 인하여 다수 장애인의 고용이 저해되고 다수의 장애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여

1) 이홍제,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 복지법제」 법무 자료 제 122집, 1989. pp. 16~17.

2) 켈트 혈, 장애인의 권리, 미국시민자유연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번역, 도서출판 함께 걸음, 1992. p. 67

“공공 건축물에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와 구성”이라는 결의를 최초로 하게 되었다. 그 후 1968년에 건축 장벽 철폐법(Architectural Barriers Act)이 제정되고, 1973년에 재활법(rehabilitate act)이 제정되어 동법 504조에 의해 정부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의한 장애인 차별이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건축물이 되도록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sup>3)</sup>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은 일정 조정이나 교실의 이동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기존의 건물을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만일 이 정도의 대처로는 곤란할 경우에는 장애인이 수감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하고 있다.<sup>4)</sup>

접근권이 법적인 개념으로는 자유권을 더욱더 자유권답게 만들기 위한 권리이며, 사회권을 더욱 사회권답게 만들기 위하여 대국가적 / 대사회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과 동시에 그것이 수단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내용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그 권리의 성격상 대국가적 급부청구권에 그치지 않고 대사회적인 청구권으로 이해해야 한다.<sup>5)</sup>

이러한 접근권의 보장 여부는 그 사회의 통합의 정도를 가늠케 하는 것이다. 시라큐스 대학의 W. Wolfensberger 교수는 “사회적 역할 강화 이론(Social Roles Valorization)”에서 통합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통합이란 한 개인이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 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개인과 참여다.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가치가 저하된 사람들이 집단이 아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단순히 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닌 가치 있는 개인적 참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필요한 지원도 없이 어떤 지역 사회로 사람을 밀어 넣는다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이것은 덩펄 현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결국 통합이란 가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정상적이고 가치 있는 시민들과 같이 가치 있는 활동, 접촉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참여를 의미한다.<sup>6)</sup>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이 보장이 될 때라야 비로소 의미 있는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대학 교육에 있어서 물리적인 환경 개선 즉, 편의 시설을 갖추므로써 통합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II. 대학 교육 시설 실태와 문제점

### 1. 물리적 환경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는 미

3)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충격, 1993. 한국장애인연맹 출판부

장애가 있는 미국인법의 약자를 딴 ADA는 미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로든 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와 접근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4) 월간 잡지 「함께 걸음」, '93년 10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간

5) 강경선, “법률적 의미로 본 장애인 접근권” 199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6) 김형식, E.COCKS, “W.울프스버거(W. Wolfensberger)의 PASSING, 정상화의 판단 기준과 등급 적용 관람” 공동 워크숍, 1996. 한국재활재단

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로든 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와 접근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 시설 중 이용 빈도 수가 가장 많은 시설과 필수 시설을 중심으로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

도서관은 학생이라면 모두가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이다. 도서관 건물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다면 턱과 계단 옆에 반드시 경사로(유효 폭 120cm이상)를 설치하고 경사로 양옆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하고, 도저히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면 계단 양옆에 반드시 규정에 맞는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개찰구가 ID카드를 이용한 삼발이식이라면 일반 개찰구 옆에 유효 폭 90cm 이상의 비상 개찰구를 설치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학생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도서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독서 카드의 높이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한다.

서가 사이는 최소 120cm 이상으로 벌려 놓아 휠체어를 타고서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도서나 전자 도서 비치는 필수적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열람실에 도서의 종류를 명시해 놓을 때 점자를 표기해야 한다.

도서관이 독립적인 건물로서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한 학교가 많은데, 장애 학생은 각 층에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열쇠를 복사하여 장애 학생에게만 주는 방법 등)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에 근거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미 일반 승강기가 설치됐다면 이 승강기 안에 연속성 손잡이를 설치하고 각 층을 알리는

번호판에 점자 표기를 하며, 장애인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번호판을 새롭게 다는 한편 층수를 알리는 무인 방송이 필요하다.

청각 장애인의 도서 대출증 발급처에서 직원과의 대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도서관 내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을 때는 이를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하며, 적어도 한 개의 화장실에는 좌변기를 설치하고 변기 옆에 손잡이 그리고 세면대 옆에 손잡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상의 시설은 장애 대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예전에 세워졌던 대부분의 도서관은 위의 설치 요건이 거의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은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있고, 도서관 출입문(개찰구) 폭이 좁거나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개가식인 경우 서가 사이가 좁아 휠체어 장애인 이용자는 경우 도서 열람이 어려운 상황이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서관 2층 이상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다. 도서관에 점자 도서와 전자 도서를 비치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가 어렵고,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가끔 도서관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으나 폭이 너무 좁아 이용하는데 있어 위험하고 어려웠다.

### (2) 구내 식당

학교 내 식당은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만큼이나 자주 왕래하는 곳이다. 따라서 장애 학생이나 일반 학생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식당 내에 편의 시설도 위 도서관 시설 설비 조건에 맞게 시설이 되어야 한다. 특히 청각 장애인의 식권 판매 직원과의 의사 소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셀

프 서비스로 조사되어졌다. 또한 식당 입구에 계단이 있으며, 손잡이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2층 이상에 식당이 있는 경우 이용하기가 꺼려지고, 식당 출입문 폭이 너무 좁아 번잡한 식당 출입이 매우 곤혹스러웠다. 또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 블록이 없고, 식당 입구에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식당 물건 이동을 위한 설비로 휠체어의 경우는 거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3) 강의실

강의실은 학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기본적으로는 위 도서관에 근거한 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계단식 강의실은 반드시 경사로(1:12)를 설치해야 하고 출입문을 적어도 9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강의실 동선에 따른 손잡이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강의실 번호표는 약시를 가진 학생의 의견을 받아 크게 해야 한다.

우리 나라 상당수의 대학은 장애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건물 구조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뇌성마비 장애 학생의 경우 강의실 문 손잡이가 둥그렇게 되어 있어 여닫는데 어려움이 많고, 건물 내의 이동(복도) 공간이 좁고, 몇 개의 계단이 있어 강의실과 강의실 이동에 많은 애로가 있다. 또한 2층 이상에 있는 강의실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강의실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과목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 (4) 화장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장시간 외출할 때는 국물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 피한다. 화장실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그런데 학교의 경우는 가끔 외출하는 경우와는 또 다르다. 만일 좌변기가 없으면 참거나 이동식

좌변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변기 옆에는 핸드레이를 설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화장실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화장실 세면대에도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 내로 들어가는 입구 등의 턱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우리 나라 대학 건물이 대체로 오래된 구식 건축물 이어서 화장실은 바닥보다 한 계단 높은 경우도 많고 어떤 곳은 아예 출입구부터 계단이 설치된 경우가 있다. 또 화장실 문이 너무 좁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좌변기까지 갈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유도 블록이 없어 시각 장애 학생들이 급한 일을 볼 경우 매우 당황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실이 너무 좁은 것이 장애인 대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불편 사항이었다.

### (5) 건물 내 계단

대학의 수업 방식은 과목에 따라 옮겨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을 자주 옮겨다녀야 하는데, 상당수의 학교 건물은 단독으로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강의동과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건물과 건물을 잇는 통로가 계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 내 계단은 장애 학생 이동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구조상 경사로 설치가 매우 가파르게 설계된 경우가 많다. 1:12 정도는 되어야 하지만 어떤 경사로는 1:9보다도 더 경사가 가파른 경우도 종종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계단의 폭이 너무 적어서 이용하는데 위험을 느끼고 있고,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계단 옆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굵기가 맞지 않아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 2. 장애인 대학생의 학교 생활 환경

장애 대학생들은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학업 수행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위의 관심을 받는 것이 싫고, 체육 시간이 곤혹스럽고, 강의에 대한 어려움 이외에도 언어 장애로 인해 학사 업무(학생증 재발급, 등록금 고지서 재발급 등)를 보기 힘든데다 도서관, 식당 직원과의 대화가 불편하고 특히 청각 언어 장애인의 경우 시설적인 면보다 대인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각 장애로 인한 정보 습득이 불편하고, 학업 면에서는 충분한 자료(점자 도서, 녹음 도서)가 없어 강의 준비가 안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제물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보는 경우 낭패를 보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 여학생은 대체적으로 여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 Ⅲ. 대책

### 1. 자원 활동자 정보 통신망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 놓았다 하더라도 보조자가 필요한 장애 학생이 분명히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 내에 자원 활동 정보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자원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의(학생들의 가용 시간을 활용) 신청을 받아 장애 학생과 '일 대 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자원 활동 정보 통신망인데, 이 같은 예는 미국의 버클리 대학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보조자가 필요한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국가 보조 - 유급 자원 활동)을 연결하여 장애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대학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buddy-buddy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인적 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 2. 학교측의 인식 전환과 행정적인 지원의 필요

장애 대학생의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 물리적 환경 조성 :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 학습을 할 수 있는 보조 기자재 등
- 장애인 복지 센터(상담 창구) : 담당자는 연수 등을 통해 장애인 관련 업무를 실제로 익힐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학 평가제에 물리적 환경, 장애인 서비스센터 등 장애인 관련 조항 삽입
- 협의체 구성 : 장애 학생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는 재단, 학교 당국, 부모, 학생으로 협의체 구성(서강대에서 실시되고 있음)

시각 장애 대학생들이 제안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는 현재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대안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 다음의 제안은 시각 장애인 대학생 연합회 포럼에서 토의된 내용을 요약했다.

① 학습 여건 - 시각 장애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음. 도서관을 가지 못함. 정보 접근의 어려움. 정보 접근권을 찾자.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학습 기자재의 부재. 점자 블록보다 오히려 컴퓨터 시스템(정보 접근 시스템) 필요. 컴퓨터 음성 확성기, 점자 프린터, 확대 독서기 등이 구비되면 학습 여건이 조성되는 것임. 이러한 것을 갖추는 학교에 가산점 등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평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② 행정적인 편의 - 도움을 받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 시스템이 필요함. 우선 학습 도우미는 학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학생이 1~2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장학생, 생활 복지 장학생처럼 장학금 제도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함.

③ 리포트를 제시 시간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과제

분석을 못해 질문을 못한다든가 등의 현상이 벌어질 때 행정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학교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 학생을 지원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학교 내에 시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다면 인근 복지관 등과 결연을 맺어 인터넷 수업 시간은 근교 복지관에서 시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고, 같은 과목이 아니더라도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④ 대학 내 교직원, 교수 등의 연수 절실히 필요. 연수를 이수해야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IV.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장애 대학생의 학업에 있어 교육 시설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분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60% 정도 편의 시설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장애인이 60% 정도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없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좌변기와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라고 할지라도 계단이 버티고 있으면 이용 가능성은 제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회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보편적인 권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 어디에나 편의 시설이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대학 평가제 기준에 장애인 평가 시설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 평가제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당한 강제력이 있는 제도이

다. 다시 말하면 '대학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정부가 대학 내의 교수 내용과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토대로 각 대학을 평가하며, 기본적인 점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학측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대학 평가제이다. 이러한 대학 평가제에 장애인 편의 시설 조항이 들어 있다면 적어도 학교 내의 편의 시설이 갖춰짐과 동시에 안전한 교정이 새롭게 구성되어질 것이다.

셋째, 적어도 장애인 특례 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사업장의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노동부는 무상 혹은 유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부의 이러한 경험을 교육부 정책에 도 연장해서 시행한다면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의 통합을 논할 때는 접근권이 보장되는 필요한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 시설이 장애인들의 접근권(right to access)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장애 대학생들을 학교에 그냥 투매(dumping)하는 것에 다름없다. **■**

#### 김정열

숭실대 경영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위원, 문화관광부 청소년 정책자문위원, 「사랑의 소리」 방송 진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참여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청소년개발원 객원연구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 「장애 청소년 실태 및 정책 대안」, 「실업 장애인 실태 및 정책 대안」, 「장애 학생 통합 촉진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대학생 교육 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장애인 직업 재활법 전망과 과제」 등 다수가 있다.